

(의안번호 제2009 -51호)

2009.12.4~12.10

제163회 거창군의회(정례회)

2010년도 거창군 기금운용 계획안
검 토 보 고 서

총 무 위 원 회
[전문위원 배성한]

<의안번호 제2009 - 51호>

〔2010년도 거창군 기금운용 계획안〕 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09. 11. 12.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09. 11. 16.

2. 제안사유

-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64조,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제1항 및 각 기금별 기금 설치·운용조례의 규정에 의거 관리중인 기금에 대하여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함.

3. 2010년도 기금개요

가. 관련근거

- 지방자치법 제142조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

나. 운용방침

- 자금운용체계의 이원화(총괄, 운영부서)로 책임, 투명성 확보
- 총괄부서(기획감사실, 운영부서(각 기금관리 운용 실.과))
- 각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도록 기금을 관리, 운용

4. 기금운용 계획안 규모<총괄>

(단위 : 백만원)

기금명	2009년말 현재액 ①	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		2010년도말 현재액 ④=①+②-③	증감
		수입 ②	지출 ③		
9 개	4,931	2,493	270	7,154	2,223
저소득주민자녀 장 학 기 금	514	20	20	514	0
기초생활보장기금	311	110	0	421	110
생활안정기금	150	154	154	150	0
노인복지기금	1,026	33	29	1,030	4
여성발전기금	1,013	42	30	1,025	12
식품진흥기금	11	12	18	5	△6
아름 예술제 진 흥 기 금	500	20	19	501	1
체육진흥기금	39	4	0	43	4
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	1,367	2,098	0	3,465	2,098

5. 검토의견

▣ 주민생활지원과

(단위 : 백만원)

기금명	2009년말 현재액 ①	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		2010년도말 현재액 ④=①+②-③	증감
		수입 ②	지출 ③		
5 개	3,014	359	233	3,140	126
저소득주민자녀 장 학 기 금	514	20	20	514	0
기초생활보장기금	311	110	0	421	110
생활안정기금	150	154	154	150	0
노인복지기금	1,026	33	29	1,030	4
여성발전기금	1,013	42	30	1,025	12

◆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(p11)

- 거창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거창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자녀 중 성적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조성 목표액은 5억원이며, 재원조성은 군의 출연금, 기탁금,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금으로 조성 운영되고 있으며,
- 지원기준은 이자 수입액 범위 안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,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지원하고, 1인 지원기준은 중학교 일반장학생에게는 40만원을, 중학교 특별장학생과 고등학교 일

반장학생에게는 각각 60만원을,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게는 80만원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.

-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말 현재액은 514백만원이며, 201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20백만원, 지출 20백만원이며 2010년도 말 현재액은 514백만원으로 기금은 농협에 예치되어 있음.
- 당초 기금설치 목적대로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◆ 기초생활보장 (p15) 및 생활안정기금(p19)

- 거창군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· 운용조례에 의거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금으로
-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말 현재액은 461백만원이며, 201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264백만원, 지출 154백만원이며 2010년도 말 현재액은 150백만원으로 기금은 농협에 예치되어 있음.
- 당초 기금설치 목적대로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◆ 노인복지기금(p23)

- 거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제3조(기금의 조성)에 의거 거창군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되는 기금으로서 조성목표액은 10억원으로, 2007년도에 그 목표를 달성하였음.

-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말 현재액은 1,026백만원이며, 201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33백만원, 지출 29백만원이며 2010년도 말 현재액은 1,030백만원으로 기금은 농협에 예치되어 있음.
- 당초 기금설치 목적대로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◆ 여성발전기금(p27)

- 거창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설치·운용조례에 의거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를 위한 여성정책개발·연구 및 여성 복지증진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
-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말 현재액은 1,013백만원이며, 201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42백만원, 지출 30백만원이며 2010년도 말 현재액은 1,025백만원으로 기금은 농협에 예치되어 있음.
- 당초 기금설치 목적대로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■ 민원봉사과(p31)

(단위 : 백만원)

기금명	2009년 말 현재액 ①	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		2010년도 말 현재액 ④=①+②-③	증감
		수입 ②	지출 ③		
식품진흥기금	11	12	18	5	△5

-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제82조 및 같은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징수한 과징금,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,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,
-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말 현재액은 11백만원이며, 201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2백만원, 지출 18백만원이며 2010년도 말 현재액은 5백만원으로 기금은 농협에 예치되어 있음.
- 당초 기금설치 목적대로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■ 문화관광과

(단위 : 백만원)

기금명	2009년말 현재액 ①	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		2010년도말 현재액 ④=①+②-③	증감
		수입 ②	지출 ③		
2개	539	24	19	544	5
아림 예술제 진흥기금	500	20	19	501	1
체육진흥기금	39	4	0	43	4

◆ 아림예술제 진흥기금(p37)

- 아림예술제 진흥기금은 거창군 아림예술제 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에 의거 향토 문화예술축제인 아림예술제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재원조성방법은 출연금과 아림예술제 행사잉여금, 기타수입금 등으로 하고 있으며,
 - 지원기준은 매년 아림 예술제 위원회의 사업계획에 따라 총 행사비의 일정부분을 지원하고 있음.
-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말 현재액은 500백만원이며, 201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20백만원, 지출 19백만원이며 2010년도 말 현재액은 501백만원으로 기금은 농협에 예치되어 있음.
- 당초 기금설치 목적대로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◆ 체육진흥기금(p41)

- 체육진흥기금은 거창군 체육진흥기금조성 운영조례에 의거 거창군 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주요규정을 살펴보면
 -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체육회의 사업계획을 보고받아 이자액 범위 내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,
 - 기금사용은 연간 이자수입액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
 - 기금 재원조성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과 체육단체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금, 체육시설에 대한 임대료, 사용료 수입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.
-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말 현재액은 39백만원이며, 201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4백만원이며 2010년도 말 현재액은 43백만원으로 기금은 농협에 예치되어 있음.
- 당초 기금설치 목적대로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◆ 중소기업육성기금(p52)

(단위 : 백만원)

기금명	2009년 말 현재액 ①	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		2010년도 말 현재액 ④=①+②-③	증감
		수입 ②	지출 ③		
중소기업육성기금	1,367	2,098	0	3,465	2,098

-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규정을 살펴보면
 - 기금적립 목표액은 100억원이며, 2010년도에는 20억원을 적립할 계획이고,
 - 기금 지원대상은 군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제조업, 공예품 및 화강석 채석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크고 국가시책을 수행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업체에 지원하며,
 - 기금 재원조성은 군 출연금,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, 기타 수입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.
-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말 현재액은 1,367백만원이며, 201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2,098백만원이며 2010년도 말 현재액은 3,465백만원으로 기금은 농협에 예치되어 있음.
- 당초 기금설치 목적대로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5. 참고자료 (기금설치·운용조례)

□ 거창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

제 1조 (목적)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71조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거창군식품진흥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기금의 조성)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.

1.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
2.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
3.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

제 3조 (기금의 사용용도)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 다만, 식품위생 발전을 위하여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추진하는 광역 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.

1.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·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비 지원
2.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
3. 위해식품 등에 대한 신고자 보상
4. 식품위생교육 및 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
5.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
6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수반되는 부대 경비

제 4조 (기금운영위원회 구성)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거창군식품진흥기금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제 11조 (기금의 관리·운용)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른 회계로부터 독립된 기금계좌를 설정하여 관리·운용 한다.

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이자수익율이 높은 금융 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.

□ 거창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

제 1조 (목적)이 조례는 저소득주민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기금의 설치)

군수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(이하 "장학기금"이라 한다) 지급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.

제 3조 (기금의 조성)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기금조성 목표액에 도달 될 때까지 계속 조성한다.

1. 군의 출연금

2. 기탁금

3.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금 및 기타수입금

제 4조 (기금의 용도)기금은 군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자녀의 장학금 지급 용도에 사용한다.

제 5조 (기금의 운용·관리)① 기금은 군수가 운용·관리하되,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한다.

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군내의 금융기관에 예치·관리하여야 한다.

③ 장학금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 수입액 범위 안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,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 8조 (장학생의 자격)① 일반장학생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중에서 입학 또는 재학중 학업성적이 전과목 총점에 대한 평균점수가 100분의 50이상인 중학생 및 고등학생으로 한다.

② 특별장학생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년·소녀가장 및 가정 위탁아동 또는 학교 내·외의 각종 학업 및 실기 관련대회 입상자와 기타 정부의 자활시책 추진에 모범이 된 자로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의 장학생중 이미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..

제 10조 (장학생 선발)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.

1. 읍·면장은 제8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년 군수에게 추천한다.

2. 군수는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읍·면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거창군정조정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.

□ 거창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

제 1조 (목적)이 조례는 거창군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기금의 설치)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자금을 확보·지원하기 위하여 거창군 노인복지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.)을 설치 한다.

제 3조 (기금의 조성)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 한다.

1. 군 출연금

2.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기타 수입금 등

② 군수는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 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처리할 수 있다.

제 4조 (기금의 운용 관리)① 기금은 군수가 운용 관리하되 노인복지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 한다.

②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군 금고에 수익률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하여 관리 한다.

③ 기금 집행은 당해 연도 이자 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수익금의 10%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할 수 있다.

제 5조 (기금의 용도)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목적에 사용한다.

1. 충효,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
2. 군 노인 회보 발간
3.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 지도
4.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
5. 노인문제상담소 운영
6.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
7. 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 운영 지원
8.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
9.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

□ 거창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설치·운용조례

제 1조 (목적)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여성정책개발·연구 및 여성복지증진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거창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하고 여성들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한 거창군 여성발전기금(이하"기금"이라한다)의 설치 및 관리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14조 (재원)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
2.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
3. 기타 수입금

제 15조 (용도)①기금은 여성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.

1. 여성단체 등을 통한 건전한 국민운동 전개
2. 여성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조사 연구
3. 우수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, 여성지도자 국내외 연수 및 여성단체의 국제교류
4. 여성지위 향상과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입액 범위안에서 사용하여야 하며, 기금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전액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.

제 16조 (운용 관리)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운용하여야 한다.

- ②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거창군관내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- ③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, 지출, 출납, 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 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.

□ 거창군 아립예술제진흥기금조성 운영조례

제 1조 (목적)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아립예술제(이하 "아립제"라

한다)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거창군아림제진흥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의 조성, 관리,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용어의 정의)① "아림제"라 함은 향토문화예술의 꽃을 피우고 군민의 화합의 장이 되도록 아림예술제위원회가 추진하는 문화예술행사를 말한다.

②"아림예술제위원회"는 "아림제"의 문화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.

제 3조 (기금의 조성)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
2. 아림제 행사 잉여금
3. 기타 수입금

② 거창군은 제1항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.

제 5조 (기금의 용도)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 할 수 없다.

1. 아림제 행사추진
2. 기타 아림제 진흥과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

② 이 기금은 연간 이자수입액 범위내에서만 사용한다.

□ 거창군 체육진흥기금조성 운용조례

제 1조 (목적)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거창군 체육회(이하 "체육회"라한다)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거창군 체육진흥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의 조성, 관리,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기금의 조성)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국가,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보조금
2. 체육단체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3. 거창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2조 제1호의 체육시설에 대한 임대 및 사용료수입
4. 기타 수입금

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기금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.

제 4조 (기금의 사용)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.

1. 지방체육 진흥사업
2. 우수선수 육성 사업
3. 군민체육대회 개최
4. 도민체육대회 참가
5. 기타 체육진흥과 관련되는 사업이나 활동

② 기금은 연간 이자수입액 범위내에서만 사용한다.

□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

제 1조 (목적) 이 조례는 「중소기업기본법」(이하"법"이라 한다) 제3조, 「지방자치법」 제133조 및 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,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08. 1. 14)

제 2조 (기금의 설치) 군수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.

제 3조 (기금의 조성)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군의 출연금
2.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3. 기타 수입금

② 군수는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.

제 4조 (기금의 용도) 기금은 군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

1.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이차보전 자원
2. 기타 기금의 운용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규칙이 정하는 사항

제 8조 (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) 군수는 군내 중소기업 등이 기금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조성된 자원(이하"자금"이라 한다)을 융자받은 경우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.

제 10조 (융자금의 용도) ① 군수가 융자대상 업체에 대하여 융자지원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적합하여야 한다.

1. 경영안정자금
2. 기술개발자금
3. 시설 현대화자금
4. 기타 규칙에서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

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자금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.